

「가치있는 스포츠, 같이하는 인권존중」



대한체육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지도자 징계 이력 확인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76호(2022.01.25.)관련입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의거, 2021.6.9.부터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동법 제18조의13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 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동 조항이 2022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11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 심판 및 임직원과의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체결 시에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 이에 시·도체육회에서는 회원단체(시군구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에도 안내하여 개정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및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자료 각 1부. 끝.

대한체육회장



수신 시도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장_정회원, 회원종목단체장_준회원, 회원종목단체장_인정단체

★대리 이은혜 실장 전결 01/27 김재형

협조자 과장 황병춘 차장 조정환

시행 공정체육실-199 (2022.01.27.) 접수 경기운영과-95 (2022.01.27.)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대한체육회) /
전화 02-420-4203 /전송 / grace@sports.or.kr /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동법 제18조의13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 "체육회등"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경기단체" :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 스포츠 단체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8호 "운동경기부" :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

3. 또한 동 조항이 2022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11일부터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 심판 및 임직원과의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에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 체육회등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는 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맹 법인이나 단체에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사항을 소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및 관할 지역 내 운동경기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수신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장, 사단법인 KBL, 사단법인 야구위원회총재, 한국배구연맹총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재단법인스포츠클럽센터이사장

행정주사 **김윤영** 행정사무관 **조현성** 체육정책과장 **정태경** 전결 2022. 1. 25.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376 (2022. 1. 25.)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입학관리과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3113 팩스번호 02-746-9049 / areuok2@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

'21.6.8.(화) / 스포츠윤리센터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제18조의13제④항) 이행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법률 제17580호, '21.6.9. 시행)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급조항 대응 계획

- 징계정보시스템 개시('22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수기 확인서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2681호(2021.6.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징계 이력 발급 확인 협조요청

□ 발급/신청 방법

- (발급주체) 스포츠윤리센터(msbg@k-sec.or.kr / 문의: 02-6220-1327-1329)
- (발급대상) '21.6.9. 이후 게시된 채용공고를 통해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최종합격, 재계약 포함)체육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조회정보)

| 개인 정보 | 소속 정보 | 징계 정보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선택사항) | 이전/현재 소속단체(팀) | 징계기관, 징계양정(징계기간, 징계종류), 위반행위(선택사항, 범죄경력자료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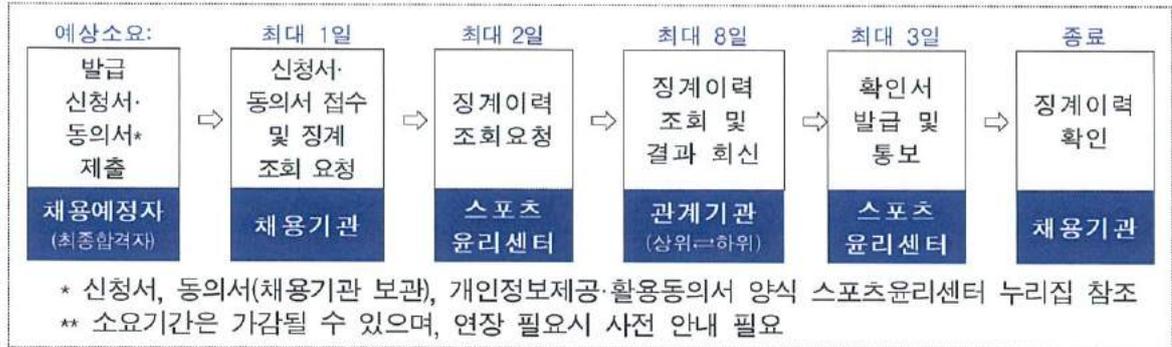
- (신청방법)

- [신청주체]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기관
- [요청방법] 발급요청 공문 발송(채용기관→스포츠윤리센터)

· LDAP(전자문서)을 이용하실 경우, 문서24 등록기관 중 스포츠윤리센터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msbg@k-sec.or.kr)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모사전송(FAX)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공문을 보내주신 경우 전화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요청공문 내에 요청 담당자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첨부서류] 최종합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https://www.k-sec.or.kr>) 서식자료실 내 양식 게시 예정(6.9.)

- (확인서 적용) 발급된 확인서는 각 채용기관·단체의 채용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규칙 등에 따라 적용
- (발급절차) 최대 14일 소요(예상)



□ 기타 권고사항

- 위반행위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신청서에 ‘위반행위’를 체크하여 주시고,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www.k-sec.or.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도자 채용 공고시 권고사항)
 - 체육 관련 모든 이력을 기재하도록 안내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활용계획 공고문 내 기재
 - * 징계 양정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기준 명시
 - * 경력기재 누락으로 징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기준 명시 등
 - 신청, 조회,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전형계획 수립
- (협조 및 홍보 요청) 소속, 산하, 유관 기관·단체 등에 배포자료 적극 홍보 요청
- (보안 철저)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관련 자료, 문서보안 철저
 -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용도 외 사용 금지, 채용예정자 외 제3자 전달 금지 등
- (보관 기간) 행정문서 등 최대 3년 보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 (징계등록 철저) 각 기관 징계 발생 시 등록 철저 요청

<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과태료) >

-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